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7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이종욱 · 안철수 · 송언석

이달희 · 신동욱 · 박덕흠

최은석 · 김도읍 · 이종배

조승환 · 이양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등을 생활인구로 정의하면서, 인구감소 지역대응기본계획에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그런데 생활인구 도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해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인구의 적용 범위를 비(非)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 등으로 하여금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2조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의 수립) 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군·구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이하 “생활인구확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 기본 구상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인구증감,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추이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확대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 계획
5.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인구확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그 밖에 생활인구확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8.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p> <p>1. ~ 18. (현행과 같음)</p> <p>19.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u><신 설></u></p>	<p><u>제8조의2(생활인구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u> 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 기본계획(이하 “생활인구 확대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 기본 구상과 전략에 관한 사항</p> <p>2. 지역의 인구증감,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추이 등에 관한 사항</p> <p>3.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p> <p>4. 생활인구 확대 계획의 시행에</p>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

별 확보계획

5.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
인구확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하려면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생활인구확대계획
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은 조례로 정한다.